인천광역시고시 제2012-144호

인천도시관리계획[구월지구단위계획,도시계획시설:자동차정류장] 결정(변경)고시 및 지형도면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[구월지구단위계획,도시계획시설:자동차정류장]에 대하여 「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(☎440-4643), 남구 도시창생과(☎ 880-4486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2. 6. 18.

인천광역시장

- 1. 결정취지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4호 다목,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임
- 2. 위 치 :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5번지 일원
- 3. 면적 및 규모
 - 가. 인천도시관리계획(구월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 - 1) 구월 지구단위계획
 - 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ᄀᆸ	가구	[H 74/2)	기 정		변 경		
구분 번호 번호		면적(m²)	위 치	면 적(m²)	위 치	면 적(m²)	
변경	118	77,815.8	관교동 15번지	78,288.52	관교동 15번지	77,815.8	

○ 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 번호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18	- 가구번호 : 118 - 변경내용 : 면적감소 - 면 적 : 78,288.52㎡ → 77,815.8㎡	- 지적확정측량결과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감소

- 2)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조서
- 중심지미관지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의 세분	위 치	면적 (m²)	연장 (m)	폭원 (m)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	-	중심지미관지구	대로3-13호선변	15,882	1,063	편측15	인고1063호	
변경	-	중심지미관지구	대로3-13호선변	15,147	1,061	편측15	(1986.12.30)	

○ 중심지미관지구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지구의 세 분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중심지 미관지구	- 위치 : 대로3-13 - 변경내용 : 면적감소, 선형변경 - 연장 : 1,063m → 1,061m - 면적 : 15,882㎡ → 15,147㎡	- 지적확정측량결과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감소

- 나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 - 자동차정류장 결정(변경) 조서

7 H	도면	ПМП	시설의	01 =1	면 적(m²)			최초	
. —	표시 번호		세 분	위치	기 정	변 경	변경후	결정일	비고
변경	-	자동차 정류장	여객 자동차 터미널	남구 관교동 15번지	78,288.52	감)472.72	77,815.8	건고 제427호 (86.9.24)	

○ 자동차정류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자동차 정류장	- 시설명 : 자동차정류장 - 변경내용 : 면적감소 - 면적 : 78,288.52㎡ → 77,815.8㎡	- 지적확정측량결과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감소

4. 지형도면 : 별첨(생략 : 열람 장소에 비치)